

주택화재보험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제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물건(재물)의 특성 및 용도 등 사고발생의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담보 목적물
주택	순수주거용 주택으로 쓰이는 건물 및 그 수용 가재도구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포함) •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도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戶), 실(實)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주택 병용	주택병용 물건으로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 교습소 (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 치료 (안수, 침구(침질, 뜸질), 정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 1. 건물은 건물의 부속물(칸막이, 대문, 담 등)과 부착물(간판, 안테나 등), 부속설비(냉방설비, 가스, 전기 등)를 보험목적에 포함합니다.

2. 가재도구는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까지 포함됩니다.

나. 상품의 특이사항

- 1) 화재는 물론 폭발 또는 파열로 입은 보험목적물의 재물적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이 상품의 보험기간(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통상 1년이며,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본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으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장의 종류 및 보험금지급사유

보장명		보험금 지급사유
기본 계약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화재(벼락포함), 폭발, 파열 ^{주)} 로 인한 재물손해
선택 계약	도난위험 특별약관	강(절)도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
	전기위험 특별약관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
	지진위험 특별약관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소요,노동쟁의,항공기 및 차량위험 특별약관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으로 인해 발생 한 손해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타인이 사망 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풍재 또는 수해로 생긴 손해
	확장위험 특별약관(I)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생긴 손해
	확장위험 특별약관(II)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특별약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아 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 의 목적에 생긴 손해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 재조달가액을 보상
	가액협정보상 특별약관	보험의 목적을 평가하고 건물인 경우의 평가액은 보험의 목적에 전부손해가 생겼을 경우 재조달가 액에 의해 정함. 보험가입금액은 약정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 액을 전액 지급함.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글, 그림, 골동품, 원고, 설계서 등의 목적물에 대해 계약 체결시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중의 보험가액으로 함.
	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별약관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별약관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 특별약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발생한 손해
폭음파 특별약관	폭음파에 기인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특수건물(동산 제외)의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특별약관	특수건물(동산 제외)의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화재대물배상 특별약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주)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으로 인한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나.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보상합니다.

$$\text{보험금}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

-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보험금에서 제외합니다.

다.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의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 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기인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 참고)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 예시

가.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나. 보험료 예시

가입 예) 보험기간 : 1년, 보험목적물 : 단독주택 건물 및 가재도구

보장명		보험가입금액(원)	영업보험료(원)
기본계약	화재(건물)	100,000,000	44,300
	화재(가재도구)	10,000,000	
선택계약	도난	10,000,000	

4.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 1)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 2) 그 밖의 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5. 기타 알아두실 사항 (Q&A)

Q)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차이점 및 보상과의 관계는?
A)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계약자가 임의로 설정하며 계약상의 보상한도가 됩니다. 보험가액은 가입한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말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시가로 결정하며, 법적인 보상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보다 작지 않아야 하며, 만일 작을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만 보상받게 됩니다.
Q) 주택외의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여부는?
A) 보험에 가입하실 때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가재도구도 가입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아니어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보험금 수령권자는?
A) 보험금은 실 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건물 및 가재도구를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건물부분은 보험목적물의 실 소유자인 건물주에게 보상되며, 가재도구부분은 세입자에게 보상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세입자는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화재 이외에 풍수재 등 다른 위험에 대한 보장은?
A) 주택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 폭발, 낙뢰위험을 보장합니다. 풍수재 등 다른 위험을 추가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특약을 가입하여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며,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해당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